

대학원 생활관운영지침(ER-315-27)

[제 정 1997. 01. 16]

[1차개정 1999. 02. 02]

[2차개정 2000. 01. 28]

[3차개정 2002. 12. 26]

[4차개정 2004. 08. 10]

[5차개정 2009. 03. 30]

[6차개정 2009. 08. 27]

[7차개정 2010. 03. 26]

[8차개정 2010. 09. 17]

[9차개정 2012. 05. 30]

[10차개정 2012. 12. 26]

[11차개정 2015. 11. 09]

[12차개정 2016. 09. 12]

[13차개정 2020. 07. 0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칙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대학원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의 운영, 조직 및 관리와 생활관 예산·결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3. 30, 2012. 5. 30, 2020. 07. 02>

제2조(정의) “생활관”이라 함은 본원의 재산으로서, 본원 학생의 거주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대지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운영방침) 생활관은 다음과 같은 방침으로 운영한다.

1. 협동정신의 함양과 면학기풍의 조성
2. 준법정신의 고양과 절도 있고 규율 있는 생활의 습관화
3.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의 형성

제4조(적용범위) 생활관에 입사한 학생(이하 “입사생”이라 한다) 및 관계인의 생활관내 생활에 관하여는 타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입사요건 및 이용의 제한) 생활관의 입사 및 시설물의 이용은 본원 학생에 한한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생활관의 장은 일정기간 외부인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0. 07. 02>

제6조(자치활동) 입사생은 명량한 생활, 진리탐구 및 교양증진을 위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생활수칙) 생활관의 장은 생활관내의 질서있고 규율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입사자가 지켜야 할 생활수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0. 1. 28, 2020. 07. 02>

제 2 장 조 직

제8조(구성 및 담당부서)

① 생활관의 장은 소관처 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겸임하며, 처장은 생활관운영위원회 의결사항과 생활관운영자치위원회의 건의사항 및 면학분위기 조성, 생활지도, 위생 및 시설비품의 관리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04. 8. 10, 2016. 05. 11, 2020. 07. 02>

② 생활관에는 관리 운영상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임용계약조건, 복무, 처우에 관한 사항은 본원의 제반 인사관계 규정에 따른다.

③ 생활관의 관리 및 관련업무는 생활관 운영 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개정 2004. 8. 10, 2020. 07. 02>

제9조(생활관의 지도) ① 생활관 입사생의 지도를 위하여 사감을 둘 수 있다.

② 생활관에는 관생의 생활지도 및 생활관의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관운영자치위원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0. 07. 02>

③ 삭제 <2016. 05. 11.>

④ 삭제 <2016. 05. 11.>

제9조의2(자치회) ① 자치위원은 해당 생활관 입사생으로서 석·박사과정 재학생중에서 선발한다.

② 자치위원에게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자치회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관 거주자들의 복지 및 편의 증진 등을 위한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여 건의사항 제출
2. 생활관 내 생활 지도(신고 접수, 단속, 호실 점검 및 벌점 부여 건의)
3. 생활관 생활수칙에 의거한 포상·징계 건의
4. 기타 호실 추천 등 처장이 요청한 업무

④ 자치위원의 자격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07. 02]

제 3 장 삭제 <2002. 12. 26>

제10조 삭제 <2002. 12. 26>

제11조 삭제 <2002. 12. 26>

제12조 삭제 <2002. 12. 26>

제 4 장 입사 및 퇴사

제13조(입사원칙) ① 생활관의 입사 자격은 본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생활관의 수용능력에 따라 학생 구분(국비·과기원·일반 장학생) 및 재학연차별로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8, 2009. 8. 27, 2020. 07. 02>

② 생활관의 입사허가 기간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각 과정별 연차내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0. 1. 28, 2020. 07. 02>

③ 제2항의 과정별 연차를 초과한 학생에 대해서는 생활관 여유호실이 있을 경우, 입사기간을 자동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생활관 수용능력 초과예상시 처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고, 대상자는 3개월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7. 02>

④ 삭제 <2020. 07. 02>

⑤ 본원 박사 학위자가 졸업 후 제반사정에 의해 생활관 계속 입사를 희망할 경우에는 졸업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담당부서에 신청하고, 여유호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승인을 득하여 3개월 이내로 생활관에 거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자의 관리 기준은 연구원에 준한다.

⑥ 본원에서 승인한 창업 수행을 위해 휴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재학생에 준하여 제15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입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07. 02>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턴 활동 참여자 등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0. 07. 02>

[전문개정 2016. 05. 11]

제14조(입사허가) ①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입사원서를 제출하여 생활관 담당 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07. 02>

② 입사희망자의 수가 생활관의 수용능력을 초과할 때에는 입사 우선순위에 따라 입사자를 선정한다.

③ 처장은 입사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사예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 07. 02>

[전문개정 2000. 1. 28]

제15조(입사 우선순위) 생활관 입사 우선순위는 대학원 생활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9. 8. 27, 2012. 12. 26, 2016. 05. 11, 2020. 07. 02>

~ 4. 삭제

[전문개정 2020. 07. 02]

제16조(입사보증금 징수) ① 본원은 쾌적한 환경을 보존, 유지하기 위하여 입사생으로부터 입사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사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7조(대여물품) ① 생활관 입사자에 대하여는 책상, 의자, 책꽂이, 침대, 매트리스, 옷장, 신발장, 열쇠 1개 등을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 07. 02>

② 대여 받은 물품은 임의로 원외에 반출할 수 없다.

③ 물품 파손시 변상하여야 한다.

④ 대여 물품은 퇴사시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입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생활관에 입사할 수 없다. <개정 2010. 03. 26, 2016. 05. 11, 2020. 07. 02>

1.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퇴사처분을 받은 자 및 무단 퇴사자

3.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4.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5. 생활태도가 불량한 자

6. 원내 주거시설 중복 및 허위 사용으로 공동주거시설 운영 규칙을 위반한 자

7. 기타 정당한 사유로 처장이 입사를 허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총장의 특별조치에 의하여 자격제한의 해제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19조(각 호실의 입사정원) 생활관 각 호실의 입사정원은 2인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07. 02>

제20조(실 배정 및 이동) ① 실배정은 생활관 담당 팀장의 승인을 득하여 생활관 관리 담당자가 수행한다. <개정 2016. 05. 11, 2020. 07. 02>

② 입사생은 임의로 실을 이동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실 이동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학기내 1회로 제한하며, 실 이동원서를 제출하여 생활관 담당 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05. 11, 2020. 07. 02>

③ 처장은 본원의 방침에 따라 필요할 경우 학기 중에도 실 이동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07. 02>

④ 담당부서에서는 학생세대 배정 결과(또는 계획) 및 입사현황에 대해 연 1회 이상 생활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09> <개정 2020. 07. 02>

제20조의2(입사신청 및 실 배정 시기) ① 신입생 및 재학생의 입사신청 및 실 배정은 학기 시작일 이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타 신분 입사자의 경우, 생활관 담당 팀장은 입사 사유를 사안별로 고려하여 배정시기를 정하여 안내한다. <본조신설 2020. 07. 02>

제21조(퇴사) 입사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별도 승인을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유 발생 즉시 퇴사신청서를 제출 후 퇴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2016. 05. 11, 2020. 07. 02>

1. 제18조의 입사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휴학(단, 본원에서 승인한 창업을 위한 휴학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자퇴, 제적되었을 때
3. 건강상 생활관내에서의 생활이 부적당하다고 처장이 인정할 때 <개정 2020. 07. 02>
4. 전염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생활관 사용과 단체생활이 곤란하다고 처장이 인정할 때 <개정 2020. 07. 02>
5. 이 지침 또는 생활수칙을 위반하여 퇴사처분을 받게 될 때
6. 생활관관리비를 3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
7. 본원의 학위과정을 마치고 졸업하였을 때 (졸업식 당일까지 퇴사)
8. 원내 주거시설 이종 사용, 명의 도용 및 대여를 하거나, 무단으로 실을 이동하여 본원의 주거시설과 관련한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9. 입사 우선순위가 기숙사 수용능력을 벗어났을 때

10.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조치로 처장이 일괄 또는 부분
퇴사조치를 실시하였을 때 <신설 2020. 07. 02>

11.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에 원의 정당한 주의 및 예방 조치를 방해하거나 관련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퇴사 처분을 받게 될 때 <신설 2020. 07. 02>

제 5 장 시설 및 안전관리

제22조(시설물, 집기류 등의 유지보수) ① 시설물, 집기류 등의 유지보수는 본원이 한다. 다만,
입사생에게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 1. 28>

② 시설물, 집기류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수리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신청하고 사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보안) ① 생활관의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해 마스터키를 둘 수 있으며, 마스터키는 생활관
직원만이 보관 사용한다.

② 방 열쇠는 입사생이 소지하며, 분실로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소지자가 진다. <개정 2000. 1. 28>

③ 실 내부에서 입사생의 과실로 발생한 사항은 입사생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00. 1. 28>

④ 생활관의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생활관 담당 부서 직원 및 안전관리담당자는 수시로 각 호실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4. 8. 10, 2020. 07. 02>

제24조(화기책임자 등) ① 생활관 각 실에 화기 정.부책임자를 두며, 화기 정.부책임자는 각 실의 입사생
중 입실순으로 정.부책임자로 자동 선임한다. <개정 2020. 07. 02>

② 화기 정.부책임자는 본원 안전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의 화재예방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07. 02>

제 6 장 재 정

제25조(기본원칙) 생활관의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생활관관리비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0. 1. 28, 2010. 03. 26>

제26조(생활관관리비의 용도) 생활관관리비는 생활관 관리인의 인건비 및 생활관의 관리유지비, 시설 및 집기류의 보수비 등을 감안하여 생활관의 관리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만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0. 1. 28, 2020. 07. 02>

제27조(생활관관리비의 징수) ① 생활관관리비는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건의에 의거 교학부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0. 1. 28, 2010. 03. 26, 2020. 07. 02>

② 삭제 <2020. 07. 02>

③ 입학예정자가 학기 시작 이전에 생활관 입사를 희망할 경우, 소관처에서 안내한 신입생 공식 입사일 이후 입사자에 한하여 재학생과 같은 수준의 생활관비를 징수한다. <개정 2004. 8. 10, 2020. 07. 02>

제28조(예산 및 결산) ①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 12. 26>

② 생활관관리 담당부서는 매 사업년도 개시 후 1개월 내에 생활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 1. 28, 2010. 03. 26, 2010. 09. 17, 2020. 07. 02>

③ 생활관관리 담당부서는 매 사업년도 경과 후 1개월 내에 전년도 생활관 결산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28, 2020. 07. 02>

제29조(감사) 총장은 생활관 운영의 적정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본원 직원에게 생활관의 운영상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03. 26>

부 칙 <1997. 1. 16>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이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제정.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 2. 2>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28>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제정.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 12. 26>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8. 10>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30>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7>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03. 26>

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09. 17>

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5. 30>

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6>

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09>

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5. 11>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6. 09. 12>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7. 02>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